

공인기관 행정처분기준(제13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공인기관이 인정받은 각 분야를 기준으로 같은 분야에 대한 위반행위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같은 인정 분야에 대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 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같은 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.
- 마. 인정기구의 장은 그 처분기준이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용중지기간을 늘리거나(늘리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) 줄일 수 있다.

1) 가중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감경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인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라) 그 밖에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3조제 1항제1호	해당 분야 인정취소	전체 분야 인정취소	
나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	법 제13조제 1항제2호	해당 분야 인정취소	전체 분야 인정취소	
다. 공인기관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)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 한 사항에 해당하여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)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대 한 사항에 해당하여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)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명 적 사항에 해당하여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	법 제13조제 1항제3호	개선명령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 칭 사용중지 3개월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 칭 사용중지 3개월 해당 분야 인정취소	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 칭 사용중지 3개월 해당 분야 인정취소 전체 분야 인정취소	해당 분야 인정취소
라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	법 제13조제 1항제4호	해당 분야 인정취소	전체 분야 인정취소	
마. 부도 또는 그 밖의 사 유로 공인기관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	법 제13조제 1항제5호	전체 분야 인정취소		
바.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	법 제13조제			

사에서 기술·인력·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1)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2)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)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명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	1항제6호	개선명령	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3개월	해당 분야 인정취소
사.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1) 정기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2) 특별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	법 제13조제1항제7호	전체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6개월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6개월	전체 분야 인정취소 해당 분야 인정취소	
아. 정기검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받지 않은 경우	법 제13조제1항제8호	전체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	전체 분야 인정취소	

		칭 사용중지 3개월		
자. 인정받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 인정표시를 하고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	법 제13조제1항제9호	전체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1개월	전체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6개월	전체 분야 인정취소
차. 법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)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)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3조제1항제10호	해당 분야 인정취소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3개월	전체 분야 인정취소 해당 분야 인정취소	